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0. 5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4월 20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5월 7일

라. 상정일자: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5. 1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보건소장 엄혜숙)

가. 제안이유

-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, 유치원 등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식품전문 관련 기관(단체)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인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영양관리의 체계화 및 급식안전 확보를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시설개요

시설명 (명칭)	소재지	시설규모		시설내역	운영인력
		구분	면적(㎡)		
영등포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	영등포동1가 94-2외 1필지	공공시설 (공공청사)	161	사무실 조리교육실 회의실	8명 (팀장1, 팀원5, 행정팀원2)

○ 관리급식소 수: 139개소 이내

- 위탁기간: 2020년 9월 ~ 2023년 8월 (3년)
- 위탁사무: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관리·운영 일체
 -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·영양관리 실태조사, 순회방문 지도
 -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
 -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유형, 급식규모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
 - 대상별(어린이, 조리원, 교사, 부모 등) 위생·영양 교육 실시 등
- 소요예산(2020년 기준): 금140,0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역량 있는 전문 식품기관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함.
- 2020년 2월 현재 우리구에 설치·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시설 중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시설을 살펴보면,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총 310개소 중 274개소가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로 조사된 바 이는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 중 88%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.
- 참고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시가 자치구 내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2020년 2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소가 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.
-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련 분야에 경험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22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월 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, 유치원 등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식품전문 관련 기관(단체)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인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영양관리의 체계화 및 급식안전 확보를 위함.

2. 시설개요 및 위탁사무

가. 시설 및 세부내역

시 설 명 (명칭)	소 재 지	시 설 규 모		시설내역	운영인력
		구분	면적(m ²)		
영등포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	영등포동1가 94-2외 1필지	공공시설 (공공청사)	161	사무실 조리교육실 회의실	8명 (팀장1, 팀원5, 행정팀원2)

나. 관리급식소 수 : 139개소 이내

다. 사업규모 : 4억/년(국비 30%, 시비 35%, 구비 35%)

라. 위탁사무

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

-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·영양관리 실태조사, 순회방문 지도
-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
-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유형, 급식규모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
- 대상별(어린이, 조리원, 교사, 부모 등) 위생·영양 교육 실시 등

마. 위탁기간 : 3년(2020. 9. ~ 2023. 8.)

3. 민간위탁의 필요성

가. 역량 있는 전문 식품기관(단체, 대학교 등)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
나. 다양한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적인 지도 방안 개발 필요
다. 영양 및 위생관리 통합 네트워크 활동지원을 통한 공공 급식관리 확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발췌문 별첨(참조)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3항(설치·운영)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(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2항
(위탁기간 3년 이내)

나. 2020년 소요예산 : 140,000천원(국비 30%, 시비 35%, 구비 35%)

- 국비(42,000천원), 시비(49,000천원), 구비(49,000천원) : 2020. 9월~ 운영
- 보조비목 : 인건비, 운영비, 여비, 직무수행경비, 유형자산

관련근거

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
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 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10조(협약체결 등) ②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.

③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